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법률)

주체106(2017)년 제63권 제2호

력사에 의해 검증된 진리-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박 학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 인민들에게는 결코 인권이 보장될수 없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8권 88~89폐지)

인권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신성한 권리를 말한다. 사람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자면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자주적본성에 맞는 권리, 인권이 보장되 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단편적인 몇가지 사실자료에 근거하여 나라없는 백 성은 상가집개만도 못하며 국권을 잃으면 인권도 무참히 짓밟힌다는것을 론하려고 한다.

지난 세기 전반기 40여년간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우리 인민은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가장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유린당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인 권의 황무지로 전변되였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우리 인민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된 사실은 무엇보다먼저 사회정 치생활분야에서의 사람들의 처지를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권은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할 권리로 표현되고 행사된다.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정치생활에 참가하여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 정치적권리는 주권기관선거를 비롯한 국가관리에 자유롭게 참가하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정당, 사회단체에 망라되며 언론, 출판, 집회활동과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것 등으로 표현된다.

강도적인 방법으로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그 어느 식민지력사에서도 있 어본적이 없는 가장 잔인무도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의 정치적권리를 완전 히 말살하였다.

일제는 우리 인민에게 사소한 정치참가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았다. 자료적으로 볼 때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관리인원은 2만 8 657명으로서 그것은 일본국내에서 제일 많은 인원을 가지고있던 체신성보다 5 000명이나 더 많은것이였다. 그런데 이러한 방대한 규모의조선총독부관리구성을 민족별로 보면 불과 2~3명의 친일적인 조선인을 제외한 전원이 일본인이였다.

이러한 사실은 일제가 조선사람들에게 얼마나 정치참가를 불허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로 된다.

일제가 조선사람들에게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은 1920년대에 실시한 기만적인《지방자치제》실시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1920년대《문화통치》의 침략적본질을 가리우기 위해 일제가 들고나온 간판의 하나가 바로 《민의창달》과《지방자치제》에 기초한 지방통치의《개선》이였다.

일제는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에 참가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마치 조선인민에게 그 무슨 참정권이라도 주는듯 한 인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통치체계를 개편하는데 달라붙었다.

일제는 1920년 7월 제령 15호로 공포한 《조선도지방비령》에 따라 도평의회라는것을 조작하면서 의장에는 반드시 도지사를 임명하고 18~37명에 달하는 평의회원전원을 총독에 의한 임명제로 규정하였다.

일제는 1920년 7월 제령12호로 《부제중 개정》을 조작공포하고 그해 11월 20일 부위원들을 선출한다는 명목밑에 《선거》놀음을 벌려놓고는 선거자총수 1만 964명(그중 조선인 4 713명, 일본인 6 251명)중 8 608명을 투표에 참가시켜 조선인 57명, 일본인 133명을 《당선》시켰다.

선거자와 《당선》된 조선인들의 모두가 친일분자들이라는 사실을 념두에 둘 때 이러한 《선거》놀음을 통하여 일제가 추구한 목적은 명백한것이였다. 자치립법권이 결여되고 관권에 의한 감독통제가 법제화된 이러한 지방통치체계에서 조선사람들이 자기의 의사를 반영한다는것은 말그대로 어불성설이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당을 수립하고 단체를 결성하여 함부로 경거망동하는 일은 있을수 없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악법들을 조작하여 조선인민의 손발을 얽어매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우리 인민의 초보적인 정치적자유와 권리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일제가 조선사람들의 정치활동을 얼마나 가혹하게 탄압하였는가는 조선《병합》에 발벗고나섰으며 그후 저들의 식민지통치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활동한 《일진회》까지 믿을수 없다고 하면서 해산해버린데서 잘 나타나고있다.

일제는 1910년 한해동안에만도 《황성신문》, 《대한신문》, 《제국신문》, 《대한민보》를 비롯하여 255건의 출판물들을 정간, 폐간시켰으며 그 이전시기에 발간된 수많은 애국문화계몽관계서적들까지도 회수소각하였다.

일제는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과 초보적인 정치적자유마저 말살하기 위하여 《범죄즉결 령》, 《조선형사령》, 《조선태형령》, 《조선감옥령》, 《사상범보호관찰법》, 《치안유지법》, 《조선 림시보안법》등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고 수많은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학 살하였다.

일제는 1919년 3.1인민봉기 당시 1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을 학살하였으며 《간도대로 벌》때에는 무려 3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6 000여호의 주민들의 집을 불래워버렸는가 하면 간또대지진을 계기로 2만 3 000여명의 조선사람들을 짐승도 낮을 붉힐 야만적인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국도의 인간증오사상과 조선민족멸살에 환장이 된 일제의 이러한 책동으로 하여 식민 지통치 전기간 100여만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이 무참히 살해당하였다.

40여년간의 식민지통치기간 일제가 감행한 조선인학살만행은 그 수단과 방법, 야수성과 잔인성에 있어서 동서고금의 침략사와 식민지통치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반 인권적인 범죄였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우리 인민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된 사실은 다음으로 생존권을 포함한 경제생활분야에서의 사람들의 처지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

장받으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보수를 받고 휴식을 하며 재산소유권과 상속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지배체계를 확립한 일제는 그 초시기부터 강도적인 식민지경 제략탈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인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물질적부를 략탈하였 으며 그 과정은 우리 인민의 생존권을 포함한 인권유린말살과 직접적으로 동반되여 감 행되였다.

일제시기 부전강발전소공사장에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조선인로동자들의 처지하나만을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당시 이 공사에 참가하였던 한 조선인로동자는 《턴넬공사에서 갱도가 무너져 약 350명이 단번에 죽는 사고가 있었다. …3호턴넬수직갱공사에서 승강기가 떨어져 200명정도의로동자들이 눌리워 죽은 사고도 있었다. 노구찌는 사망신고서용지를 3만매나 찍어가지고 〈이것이면 부전호언제공사는 문제없다.〉고 떠벌였다.》고 증언하였으며 또한 《부전고원 인크라인 시운전 때 산신에게 제물을 바친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낡고 삭은 쇠바줄을 매여놓고 50명정도의 조선사람들을 태워 중도에서 떨어뜨렸다. 삭도는 떨어지고 거기에 탔던 사람들은 다죽었으며 뼈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아무런 로동보호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죽음의 고역장이였던 부전강발전소공사장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조선인로동자들의 수는 출판물에 공식발표된것만 하여도 무려 4 000명이 넘었다.

일제는 1930년대 후반기 대륙침략전쟁을 도발하고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징 발하여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몰았으며 탄광이나 광산, 군사시설공사장에서 노예로동을 강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비밀엄수》라는 명목으로 무참히 학살하였다.

당시 조선사람들의 인권과 생존권이 어느 정도로 무참히 유린되였는가는 전매착취하나만을 통해서도 충분히 집작할수 있다.

일제는 《한일합병》직후 종전의 통감부 전매과를 총독부 탁지부 전매과로 개편하고 1921년 7월에는 그를 총독부 직속기구로 만들었으며 가장 일반화된 필수소비품인 담배, 소금, 인삼, 아편을 전매품으로 규정하고 그를 통한 략탈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일제는 전매대상으로 규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저들만이 생산, 가공, 판매할수 있으며 강권에 의거하여 그 전부를 강탈할수 있다는것을 법적으로 규정하였으며《전매법범칙규칙》이라는 악법까지 조작하고 임의의 순간에 조선사람들의 집을 수색하거나 마음대로 체포, 고문, 살해까지 하였다.《담배밀매한 혐의로 전매국원이 농민을 고문, 살해》,《전매국원이 부녀자를 때려죽임, 집안수색에서 담배가 한줌 발견되였다고…》라는 제목으로 된 당시 신문들의 기사는 일제가 어떻게 조선사람들의 초보적인 생존권까지 거머쥐고 제멋대로 롱락하였는가를 잘 보여준다.

일제의 이러한 반인민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로 하여 조선사람들은 경제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부여받는 가장 초보적인 인권까지 짓밟히고 노예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우리 인민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된 사실은 다음으로 문화생활분 야에서의 사람들의 처지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모든 사람은 태여나면서부터 문화적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 치료

받을 권리,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을 할 권리, 결혼과 가정에 대한 국가적보호를 받을 권리, 인 신과 주택의 불가침권리,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조선강점시기 일제는 식민지문화통치의 총적목표를 조선사람의 《황국신민화》로 규정하고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마비시키며 조선민족을 영원히 폐멸시키기 위하여 전대미문의 야만적폭거를 감행하였으며 그 과정도 역시 가장 포악한 인권유린범죄로 일관되여있었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이 일본인들의 문명정도에까지 이르면 ··· 독립사상이 더욱 깊어져 일본의 통치에 반항할것이다.》라고 하면서 교육문제를 식민지통치의 운명과 직결시키고 우 리 인민의 지식계발을 악랄하게 가로막아나섰다.

자료적으로 볼 때 1916년 현재 보통학교는 전국적으로 447개였으며 학생수는 6만 7 600 명정도였다.

당시 우리 나라 부, 군, 도(섬)의 수가 232개, 인구가 1 750만명정도라고 볼 때 그것은 한개 부, 군, 도(섬)에 겨우 1.9개의 학교가 있었고 보통학교 학생수는 인구의 0.3%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나라에 설립되였던 보통학교의 실상에 대하여 일제도 《조선전체의 보통학교수는 일본의 제일 작은 현의 학교수보다 적다.》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1910년대말 전조선적으로 고등보통학교 및 녀자고등보통학교는 7개, 학생수는 약 1 000명에 불과하였으며 고등교육기관으로는 4개의 전문학교만이 있었고 대학은 단 한개도 없었다.

조선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떠들어대던 《문화통치》기간인 1921년도 서울시내 보통학교의 입학정형을 보아도 학령아동 1만 8 000명중 입학생수는 1 900명으로서 취학률은 겨우 10.5%였다.

일제의 이러한 식민지교육정책에 의해 조선의 학령아동을 포함한 전체 인민들은 가장 초보적인 초등교육마저 받을수 없었으며 무지와 몽매속에서 헤매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가 문화생활분야에서 조선인민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사실은 우리의 말과 글, 성과 이름마저 빼앗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한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일어상용을 강요하였으며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는 그것을 《황국신민화》의 중요한 징표로 내세우고 폭력적방법으로 강행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내선일체는 국어(일어)상용으로부터》, 《교실국어로부터 생활국어에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조선말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국어가정운동》이라는것까지 벌려놓고 일본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표 한장, 물건 한가지도 제대로 사지 못하게 통제하였다.

당시 일제의 조선어말살책동은 몇몇 사람들의 불행이나 희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 조선민족을 한칼로 쳐없애는것과 같은 대살륙이나 다름없는 참혹한 인권유린행위였다.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꿀것을 목적한《창씨개명》역시 우리 인민에게 가장 큰 정신적고통을 가한 식민지통치정책의 하나였으며 인권유린행위였다.

일제는 1940년 2월 1일부터 5개월간을 《창씨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헌병, 경찰들과 각급 행정기구들을 총발동하여 강제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1차《비국민》으로 규정하고 차표판매와 철도화물취급을 하지 않았으며 그 자녀들의 입학 및 진학도 가로막았다.

식민지통치기간 일제가 감행한 이러한 행위로 하여 조선인민의 민족적자주권과 존엄, 인

권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유린당하였다.

근 반세기에 걸친 식민지통치기간 우리 인민이 당한 온갖 멸시와 천대, 빈궁과 고통의 근본원인은 결국 일제에게 국권을 강탈당한데 있다.

국권을 빼앗긴 나라의 인민들에게는 결코 진정한 평화와 안정, 참다운 인권이 보장될수 없다는것은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는 진리이기도 하다. 사상최대의 피난민들을 산생시킨 중동과 북아프리카나라들의 현 실태는 제국주의자들의 간섭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내지 못하면 망국노의 운명을 면치 못하며 참다운 인권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오늘날 더욱 집요하게 감행되고있는 미국과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인권》모략공세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며 신성한 국권을 강탈하려는데 기본목적이 있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한것이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력침공이나 체제전복을 시도할 때마다 《인권》이 어쩌니저쩌니 하며 내정에 파렴치하게 간섭하고 나중에는 군사적침공까지 단행하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이러한 야망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영원히 이룰수 없는 개꿈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상대를 똑바로 보고 절대로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나라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 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이며 오늘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슬하에서 자 주적인간의 삶의 가치와 보람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것으로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조국을 5천년 민족사상 가장 높은 경지에 올려세 운 승리자의 긍지를 한껏 누리는 존엄높은 인민이다.

우리는 자신들의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제도가 법적으로 담보해주는 참다운 인권 의 의미를 페부로 감수하고있으며 그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가져본적이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날로 무분별해지고있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인권》모략 소동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며 《인권》의 간판을 내걸고 우리의 존엄과 제도를 감 히 해치려고 발광하는자들은 그가 누구이건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다.